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262
----------	------------

2020년 4월 29일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6조에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정할 필요가 있고,
- 안 제7조에서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관광·사회·건축·도시·계획·환경·법률 등 관련 전문가”, “공정관광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표”, “공정관광 실행 지역 거주 시민”, “그 밖에 공정관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정관광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표”와 “공정관광 실행 지역 거주 시민”은 그 범주가 너무 작거나 일부 지역의 이해관계에 매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확장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공정관광위원회의 역할이 자문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의 공정관광 중장기계획 수립 및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대안 제시 등 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심의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 또는 회피에 관한 규정을 추가함이 필요함.

- 안 제15조에서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와 관광진흥기관에 우선적으로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다른 법인·단체에 우선하여 관광진흥기관에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2. 수정 주요골자

-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명기함(안 제6조).
- “공정관광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표”와 “공정관광 실행 지역 거주 시민”을 “공정관광 관련 법인·단체의 대표”, “공정관광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가진 시민”으로 수정함(안 제7조제3항).
- 위원회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 또는 회피에 관한 규정을 추가함(안 제10조제4항에서 제6항까지).
-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와 관광진흥기관에 우선적으로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 중 “있다.”를 “있고, 그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로 한다.

안 제7조제3항제3호 중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표”를 “법인·단체의 대표”로 한다.

안 제7조제3항제4호 중 “공정관광 실행 지역 거주 시민”을 “공정관광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가진 시민”으로 한다.

안 제10조 제4항과 제5항을 각각 같은 조 제7항과 제8항으로 하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신설하여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⑤ 제4항 각 호 외에도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 위원이 제4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15조 중 “제17조”를 “제17조제1항”으로 하고, “있다.”를 “있으며, 이 경우 관광진흥기관에 우선적으로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p><u><신 설></u></p> <p>④ (생 략) ⑤ (생 략)</p> <p>제15조(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제17조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⑥ <u>위원이 제4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u></p> <p>⑦ (제정안 제4항과 같음) ⑧ (제정안 제5항과 같음)</p> <p>제15조(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 ----- ----- ----- 제17조제1항 ----- ----- -- <u>있으며, 이 경우 관광진흥기관에 우선적으로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u></p>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서울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등의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관광개발, 관광활동 및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각각 분배·환원되며, 관광목적지 주민의 삶과 문화·환경 등이 보전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정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의 정책방향

2.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3.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6. 민·관 협력체계 마련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7. 공정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제고 방안
8. 공정관광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9.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10.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그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1. 제5조에 따른 계획수립 및 시행
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대안 제시
3.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의원
2. 관광·사회·건축·도시계획·환경·법률 등 관련 전문가
3. 공정관광 관련 법인·단체의 대표
4. 공정관광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가진 시민
5. 그 밖에 공정관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시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

제8조(위원회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⑤ 제4항 각 호 외에도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 위원이 제4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⑦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지원 사업)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공정관광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5. 공정관광 인식개선 및 홍보·마케팅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12조(공정관광 지원센터)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정관광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 중앙정부, 자치구,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광진흥기관에 우선적으로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